

의안번호	제3029호
의결	2025. . .
연월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##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#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3029호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14.  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## 1. 개정이유

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,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정비

- 1) 주소정보 업무 소관 부서의 장, 도로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, 도시계획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(안 제6조 제3항)
- 2) 당연직으로 규정된 소방, 경찰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위촉직으로 변경(안 제6조제4항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: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9조(주소정보위원회)

###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## 다. 합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개선의견 미반영[복지지원과-33223(2025. 8. 28.)호]

개정안	수정안(검토의견)	검토결과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제2항 ⇒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~4. (생략) 5. &lt;신설&gt; 6. &lt;신설&gt;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제7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제2항에 '5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', '6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'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미반영</p> <p>○ 「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2항 제3호는 위원이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 성폭력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해촉 할 수 있음</p> <p>○ 특정 범죄 유형을 조례에 개별 적으로 나열할 경우, 그 외 중대한 범죄나 비위 사실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에 모든 범죄 사실을 일일이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개선 의견은 미반영함.</p>

## 라. 기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427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9. 1. ~ 2025. 9. 2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불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불임

##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주소정보 업무 소관 부서의 장
  2. 도로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
  3. 도시계획 업무 소관 부서의 장
-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1. 소방, 경찰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
  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3. 군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 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</p> <p>법 제29조에 따라 고성군주소정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<u>당연직 위원은 소방, 경찰,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u></p> <p>1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2. 군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</p> <p>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p>1. 주소정보 업무 소관 부서의 장</p> <p>2. 도로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</p> <p>3. 도시계획 업무 소관 부서의 장</p> <p>④ <u>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</u></p>

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소방, 경찰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

2.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군의 특성과 역사,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**1. 재정수반요인**

- 해당사항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-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미비점 보완, 용어 정비로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.

**작성자: 열린민원과장 박경희**

## □ 도로명주소법

[시행 2025. 2. 21.] [법률 제20341호, 2024. 2. 20., 타법개정]

**제29조(주소정보위원회)**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에 시·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, 시·군·자치구에 시·군·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, 시·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·군·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1항에 따른 시·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·군·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